

#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 바로 알기

연금과 건강보험 이야기

## 03.

###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 알아보기

근로 소득자입니다. 퇴직급여 관련하여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 제도 (DB, DC, IRP)가 있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제도는 2010년 모든 사업장에 도입되었다. 하지만 퇴직금 제도는 일시금 지급이 대부분이었고, 중간정산 등으로 인출이 빈번하여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기능으로는 미흡하였다. 또한 회사가 도산할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이 불가능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흔한 일이었다.

####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이러한 퇴직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 퇴직연금제도이다. 2005년 12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 시행되면서 퇴직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 시행되었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 보장과 생활안정을 위

해 근로자 재직중에 퇴직금의 재원을 외부 기관에 의무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퇴직급여제도인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 사업주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

####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 Defined Benefit)**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 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가 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는 근로자가 퇴직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가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평균임금은 퇴직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한달 급여 수준이라고 봐도 된다. 따라서 10년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300만원이라고 하면 퇴직금은 최저 3000만원이 된다. 따라서 DB형 퇴

직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사용자는 외부 금융기관에 3000만 원을 예치 운용해서 근로자가 퇴직시 계산된 확정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회사가 정한 운영 방법으로 수익율이 마이너스가 될 경우에는 회사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수익율이 플러스가 되면 회사는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결국 퇴직급여 운영 책임은 회사에 있게 된다.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DB형은 퇴직금 수령액에는 차이가 없다.** 다만, 퇴직금제도는 사내에 퇴직급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시 회사에 재정 문제가 발생할 경우 퇴직급여 수령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반면에 DB형은 외부 금융기관에 위탁하기에 퇴직시 회사의 재정 상황과는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정성 측면에서는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 <DB운영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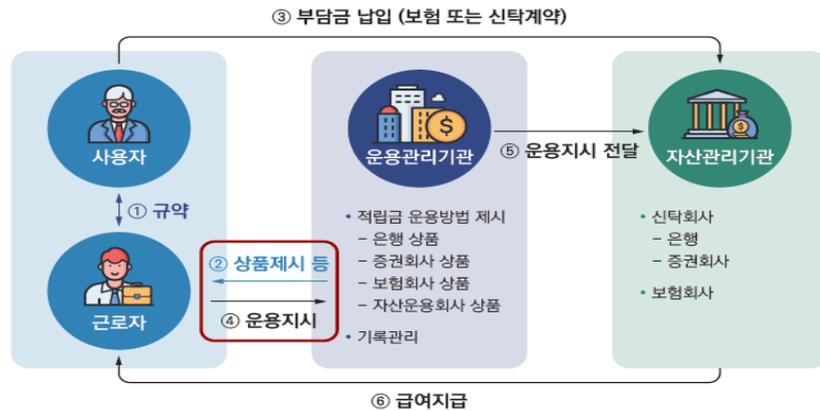


(금융감독원 통합 연금포털 참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는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임금 총액의 1/12이상의 퇴직급여 부담금을 근로자가 선택한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에 납입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작년 연봉이 1억 2000만원이라고 한다면 퇴직급여 1천만원이 근로자가 지정한 상품에 입금되어 운영된다. 또한 올해 연봉이 1억 800만원으로 감소했다면 퇴직급여 900만원이 근로자가 지정한 상품에 입금되어 운영된다. 따라서 매년 임금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급여 부담금은 매년 변동하게 되고 퇴직급여 부담 의무 또한 매년 종결되게 된다. 근로자 측면에서는 본인이 설정한 운영방법에 따라 수익율이 마이너스도 날 수 있고, 퇴직급

여 적립금 외의 추가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운영결과에 따라 퇴직시 받게 되는 급여 수준이 달라지게 된다. 결국 퇴직급여 운영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가 져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운용지시 역량이 중요하게 된다.

### 〈DC운영 구조〉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는 퇴직급여를 일시 수령한 사람이나 DB, DC가입자가 자기 부담금으로 추가 불입하려는 사람(연간 1800만원 한도)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10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하에 IRP 개설 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을 본다. 개인형 IRP의 경우 근로자 본인 부담금에 대하여서는 일정액의 세액 공제의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